



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선거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거규정이라 한다. (이하 ‘선거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제2장(임원) 제6조(선거방법)와 제3장(부원, 위원 및 이사과 총무) 제8조(상비부) 제2항(선거 방법과 임기)에 의하여 임원 및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장, 기독교신문 이사장 및 사장, 세계선교회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의 선거제도를 규정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 총회 규칙 제3장(부원, 위원 및 이사과 총무) 제11조(위원회) 4항(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총회에서 실시하는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4조 (선임) :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위원은 목사 8인, 장로 7인 총 15인으로 하며 3개 지역 구도별로 균등하게 배정한다.
2. 직전 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는 당연직으로 한다. 단, 당연직 위원 유고시에는 해당 지역구도와 해당 직분(목사, 장로)자 중 총회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3.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입후보를 받아 총회 현장에서 그 지역 총대들이 투표로 선출한다.
4. 직전 선거관리위원장은 자문위원으로 한다.

제5조 (임기 및 보선과 사임 등)

1.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총회규칙 제 3장 제11조(위원회) 4호 4)”를 원용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총회임원과 공천위원장, 상비부장, 기관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3. 결원된 위원은 14일 이내 총회임원회가 해당지역구도의 해당직분자 중에서 보선한다.
4. 위원이 시무하는 동일노회에서 총회임원 및 기관장 입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임된다.

제6조 (조직 및 직무)

1.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여 선거 관리의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서기 : 위원회 회의 안건 및 문서수발을 담당하며 입후보자의 등록접수, 기타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4. 회록서기 :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위임한다.
5. 회계 : 입후보자의 총회발전기금 및 등록금 수납 후 영수업무와 위원회의 재정업무 및 선거관리특별회계를 장리 관장한다.

제7조 (분과위원회 조직 및 임무) 분과 위원은 본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심의분과(총5명; 목사3명, 장로2명) : 입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등록서류 검사 자격유무 확인 및 행정(당회, 노회, 총회) 절차를 사실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2. 관리분과(총3명) : 선거에 필요한 비품 및 장비 일체를 관리하여 선거진행을 신속하게 관장한다.

3. 홍보분과(총3명) : 선거에 대한 제반 홍보 및 후보자 공보사항을 관장한다.

4. 계산통계분과(총3명) : 위원회의 제반 통계와 제1차 예비뽑기, 제2차 결선투표 결과를 집계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 (직인) 본 위원회의 직인은「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선거관리위원장」명의로 하고 서기가 보관한다.

제3장 입후보 자격

제10조 (공통사항) : 총회 임원 및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자격의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의 절차를 거친 교회는 동일교회로 간주한다.
2.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의 절차를 거친 노회는 총회보고 이전이라도 동일노회로 간주한다.
3. 노회가 21당회 미달할 경우에는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

제11조 (총회임원 입후보 자격)

1. 총회장

- ① 등록일까지 만 57세 이상 된 자
- ② 목사장립 후 만 20년 이상 된 자
- ③ 등록일까지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에서 무흠 만 15년 이상 된 위임목사
- ④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10회 이상 된 자

2. 목사 부총회장 : 총회장 입후보자의 자격과 동일하다. 단 2회 입후보만 가능하다.

3. 장로 부총회장

- ① 등록일까지 만 60세 이상 된 자
- ② 장로장립 후 만 15년 이상 된 자
- ③ 등록일까지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에서 무흠 만 15년 이상 된 시무장로
- ④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6회 이상 된 자

4.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 ① 목사장립 후 만 15년 이상 된 자
- ② 등록일까지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에서 무흠 만 10년 이상 된 위임목사
- ③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7회 이상 된 자

5. 회계, 부회계

- ① 장로장립 후 만 10년 이상 된 자
- ② 등록일까지 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에서 무흠 만 10년 이상 된 시무장로
- ③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5회 이상 된 자

제12조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의 입후보 자격)

1. 상비부장

- ① 각 상비부장은 1년조에서 선출하고 해당부서에서 2년 동안 봉사한 자로 하며, 등록일 까지 무흠(권징조례 제5장 제35조에 의거 처벌되지 아니한자) 만 7년 이상 된 자.
- ② 정치, 교육, 고시, 신학, 재판, 재정, 감사(7개)부장은 장립 후 10년 이상 경과하고 조직교회 시무자이며 총대경력 5회 이상인 자로 한다.
- ③ 등록마감일까지 등록자가 없는 상비부서는 15일 이내 1년조에게 개별통보하여 재등록 후 시



행한다.

- ④ 재등록자가 없을시 총회기간 중 위원회에서 해 부서 2년조 중에서 복수 추천하여 시행한다.
단, 등록금은 면제한다.

2. 공천위원장

- ① 위임목사(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 만 7년 이상 된 자
- ② 등록일까지 무흠 5년 이상 된 자
- ③ 등록일까지 현재 노회장직에 있는 자

3. 기관장

1)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 ① 위임목사(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 만 15년 이상 된 자
- ② 등록일까지 무흠 만 10년 이상 된 자
- ③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5회 이상인 자
- ④ 등록일까지 만60세 이상된 자

2) 기독교신문이사장

- ① 위임목사(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 만 15년 이상 된 자
- ② 등록일까지 무흠 만 10년 이상 된 자
- ③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5회 이상인 자

3) 기독교신문 사장

- ① 장립(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 후 만 15년 이상 된 시무장로
- ② 등록일까지 무흠 만 10년 이상 된 자
- ③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5회 이상인 자

4)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 ① 위임목사(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 만 15년 이상 된 자
- ② 등록일까지 무흠 만 10년 이상 된 자
- ③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5회 이상인자
- ④ 본인 재직 시 선교사 2가정 이상 파송교회 당회장

5)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 ① 위임목사(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 만 15년 이상 된 자
- ② 등록일까지 무흠 만 10년 이상 된 자
- ③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5회 이상인자

4. 재판국원

- ① 목사 : 위임목사(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 만 15년 이상 된 자
장로 : 장립(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 후 만 15년 이상 된 시무장로
- ② 등록일까지 무흠 만 10년 이상 된 자
- ③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7회 이상인자

5. 선거관리위원

- ① 목사 : 위임목사(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 만 10년 이상 된 자
장로 : 장립(동일교회 또는 동일노회) 후 만 10년 이상 된 시무장로
- ② 등록일까지 무흠 만 10년 이상 된 자
- ③ 등록일까지 총대경력 6회 이상인자

제4장 입후보 및 등록

제13조 (지역순환제 등)

1. 총회 임원
 - 1) 총회임원 입후보자는 동일 노회에서 1인으로 한다.
 - 2) 총회임원의 입후보는 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지역 3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
 - 3) 정임원으로 추대되는 지역에서는 부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없다.
 - 4) 총회임원 입후보자는 소속교회 당회의 추천받아 당해 연도 7월 임시노회에서 본인이 참석하여 추천받아야 한다.
2. 상비부 및 공천위원회 임원
 - 1) 상비부장은 지역순환 없이 선출하되 기타 임원은 부장이 지역구도별로 1인씩 제청하여 그 부서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낙선한 후보자는 그 회기 임원이 될 수 없다.
 - 2) 공천위원장은 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지역 3개 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 단, 낙선한 후보자는 그 회기 임원이 될 수 없다.
3. 기관장 중 총회신학원 운영이사장, 기독교신문 이사장 및 사장,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은 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지역 3개구도로 순환하여 시행한다.
4. 3개 구도 순환시 해 지역 사정상 입후보를 포기하거나 후보가 없을 시 차순위 지역으로 순환한다.
5. 선출직에 당선된 자는 그 임기가 마치기 전에는 또 다른 선출직에 출마 할 수 없다.

제14조 (입후보 등록제한)

1. 외국 시민권자.
2. 개인의 문제로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자(단, 성경 및 헌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임기 내 정년에 해당되는 자
4. 동일 노회에서 총회임원 1인과 상비부장 1인을 초과한 경우(단, 입후보자 중 총회 임원이 목사인 경우 상비부장은 장로로 하고, 총회 임원이 장로인 경우 상비부장은 목사로 한다.)단, 기관장은 총회임원에 준한다.
5. 교회, 노회 및 총회에 관한 건으로 교단의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법에 따라 가처분, 가압류 등을 포함한 민,형사상의 소송(고소, 고발 등)을 제기하여 패소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총회를 상대로 하여 가처분, 가압류를 포함한 민, 형사상의 소송을 진행 중인 자

제15조 (등록공고) 위원회는 매년 2월 중과 3월 중(2회)에 걸쳐 한 회기 내에 실시할 모든 선거의 등록공고 사항을 총회 기관지에 일괄 공고한다.

제16조 (등록기간, 기호선정)

1. 총회임원 : 매년 7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9시부터 둘째주 금요일 17시까지 등록한다.
2. 상비부장 및 공천위원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 매년 7월 셋째 주일 후 월요일 9시부터 셋째주 금요일 17시까지 등록한다.
3. 기관장 : 해당 연도 7월 셋째 주일 후 월요일 9시부터 셋째주 금요일 17시까지 등록한다.
4. 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까지로 연장한다.
5. 후보자 기호순서는 본 위원회에서 후보자 본인 추천으로 선정한다. 단, 후보자 본인이 추천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참석자의 기호추첨 다음번호를 부여하되, 장립순, 나이순으로 한다.

제17조 (등록서류)



1. 총회임원

- 1) 등록원서(소정양식) 1부 및 명함판 사진 3매
- 2) 이력서 1부
- 3) 소속노회 추천서 1부
- 4)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교단합동당시 인정된 교단 신학교) 졸업증명서(목사) 1부
- 5) 장립증명서 각 1부
- 6) 발전기금 납입영수증 1부
- 7) 무흠증명서(목사는 노회, 장로는 당회) 1부
- 8)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10) 혼인관계증명서 1부
- 11) 총회총대 경력증명서(해당 노회) 1부
- 12) 입후보자 소견서(A4용지, 12포인트, 자간125%, 행간160% 이내) 1부
- 13) 위임증명서 1부
- 14) 세례교인헌금납부증명서 1부
- 15) 부임원에서 정임원 등록 시 위 1), 3), 6), 12), 14) 서류만 제출한다.

2. 상비부장

- 1) 등록원서(소정양식) 1부 및 명함판 사진 3매
- 2) 이력서 1부
- 3) 본 교단 신학교 졸업증명서(목사) 1부
- 4) 장립증명서 각 1부
- 5) 등록금 납입영수증 1부
- 6) 무흠증명서(목사는 노회, 장로는 당회) 1부
- 7)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9) 혼인관계증명서 1부
- 10) 총회총대 경력증명서(해당 노회) 1부
- 11) 위임증명서 1부
- 12) 세례교인헌금납부증명서 1부

3. 공천위원장

- 1) 등록원서(소정양식) 1부 및 명함판 사진 3매
- 2) 이력서 1부
- 3) 본 교단 신학교 졸업증명서(목사) 1부
- 4) 장립증명서 각 1부
- 5) 등록금 납입영수증 1부
- 6) 무흠증명서(노회) 1부
- 7)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9) 혼인관계증명서 1부
- 10) 위임증명서 1부

- 11) 세례교인헌금납부증명서 1부
4. 기관장
 - 1) 등록원서(소정양식) 1부 및 명함판 사진 3매
 - 2) 이력서 1부
 - 3) 본 교단 신학교 졸업증명서(목사) 1부
 - 4) 장립증명서 각 1부
 - 5) 발전기금 납입영수증 1부
 - 6) 무흠증명서(목사는 노회, 장로는 당회) 1부
 - 7)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9) 혼인관계증명서 1부
 - 10) 총회총대 경력증명서(해당 노회) 1부
 - 11) 위임증명서 1부
 - 12) 세례교인헌금납부증명서 1부
 - 13) 선교사파송증명서(GMS) 1부 -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에 한함
5. 재판국원
 - 1) 등록원서(소정양식) 1부 및 명함판 사진 3매
 - 2) 이력서 1부
 - 3) 본 교단 신학교 졸업증명서(목사) 1부
 - 4) 장립증명서 각 1부
 - 5) 무흠증명서(목사는 노회, 장로는 당회) 1부
 - 6)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8) 혼인관계증명서 1부
 - 9) 총회총대 경력증명서(해당 노회) 1부
 - 10) 위임증명서 1부
 - 11) 세례교인헌금납부증명서 1부
 - 12) 7개부서 경과(경력)확인서(총회) 1부
6. 선거관리위원(선출직)
 - 1) 등록원서(소정양식) 1부 및 명함판 사진 3매
 - 2) 이력서 1부
 - 3) 본 교단 신학교 졸업증명서(목사) 1부
 - 4) 장립증명서 각 1부
 - 5) 무흠증명서(목사는 노회, 장로는 당회) 1부
 - 6)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8) 혼인관계증명서 1부
 - 9) 총회총대 경력증명서(해당 노회) 1부
 - 10) 위임증명서 1부
 - 11) 세례교인헌금납부증명서 1부
7. 선거관리위원(당연직)



- 1) 등록원서(소정양식) 1부 및 명함판 사진 3매
-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3) 세례교인헌금납부증명서 1부
8. 총회 총무
 - 1) 등록원서(소정양식) 1부 및 명함판 사진 3매
 - 2) 이력서 1부
 - 3) 소속노회 추천서 1부
 - 4)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교단합동당시 인정된 교단 신학교) 졸업증명서(목사) 1부
 - 5) 장립증명서 각 1부
 - 6) 무흠증명서(목사는 노회, 장로는 당회) 1부
 - 7) 주민등록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9) 혼인관계증명서 1부
 - 10) 총회총대 경력증명서(해당 노회) 1부
 - 11) 입후보자 소견서(A4용지, 12포인트, 자간125%, 행간160% 이내) 1부
 - 12) 위임증명서 1부
9. 모든 입후보자는 소정의 양식을 따라 “공명선거 서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 및 선거규정 등을 비롯한 제반 결의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과 선거와 관련하여 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하여 사회법에 의거 민, 형사상 제소,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서약합니다.” 로 한다.

제18조 (입후보자 자격심사)

1. 각 선거의 입후보자는 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격심사를 완료하여 후보자를 확정한다.
2. 모든 입후보자 심의 중 필요시 소속노회의 당해 연도의 회의록을 제출 요구할 수 있다.
3. 후보자의 자격심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의한다.
 - 1) 1차 (심의분과 심사)
 - ① 본 규정 제 3장 입후보자 자격 적부
 - ② 본 규정 제 4장 입후보 및 등록 적부
 - ③ 본 규정 제 6장 선거에 대한 규제사항 저촉 여부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증을 한 후 심의분과 회의록과 의견서를 서면으로 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위원회 서기에게 심의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2) 2차 (전체회의 심사)
 - ① 심의분과로부터 1차 심의결과보고서가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 전체회의의 심사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후보자 출석 후 직접 사실 확인과 소명서 제출 등으로 사실 확인할 수도 있다.
 - ③ 전체회의의 심사를 종료하고 후보자 확정시 전체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심의기간 촉박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본 규정 제 18조 1항에도 불구하고 전체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 ⑤ 선관위는 노회 추천을 받고 등록하지 않는자와 후보등록 후 사퇴자는 해 노회에 반드시 통

보한다. 단, 통보 누락시라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9조 (후보자 홍보)

1. 자격심사 완료 후 최종 후보자가 확정되면 총회 개회 15일 전으로 후보자 신상 및 이력을 총회 기관지에 1회 공고하고 홍보유인물을 제작하여 전 총대들에게 배부한다.
2. 총회 임원후보 정견발표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지역별(3구도)로 각 1회씩 개최 한다.

제20조 (입후보자 발전기금 및 등록금)

1. 총회임원

- 1) 총회장 및 목사부총회장은 70,000,000원으로 하며, 장로부총회장은 40,000,000원으로 한다.
- 2) 여타 임원은 20,000,000원으로 한다.
2. 상비부장은 2,000,000원으로 한다.
3. 공천위원장은 5,000,000원으로 한다.
4. 기관장은 20,000,000원으로 한다.
5. 입후보자 발전기금 및 등록금을 변경하고자 할 시는 위원회의 결의로 총회 인준을 받아 공고 후 시행한다.

제21조 (발전기금 관리) 후보자가 납부한 발전기금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입후보자들의 등록금은 총회 발전기금으로 적립한다.
2. 위원회 제반 관리비용은 총회 경상회계 예산으로 사용한다.
3. 입후보자가 납부한 총회발전기금 및 등록금은 사퇴 및 낙선 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비용을 제외한 잔액은 총회 및 해 기관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

제5장 선거 방법

제22조 (선거방법)

1. 총회임원은 총회에서 후보자 전원을 상대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로서 선정한다. 단, 총회 현(現) 부임원을 정 임원으로 추대한다.
2.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선거는 후보자가 3인 이상 일 때는 제비뽑기로 결선투표 후보자 2인을 선정한 후 해당부서(기관)에서 결선투표로 선출한다. 단, 재판국장이 경선일 경우에는 재판국원 선거 후 실시한다.

제23조 (총회임원 및 총회총무 선거 시행방법)

1. 선거준비 : 총회개회 하루 전 위원회 주관으로 투표를 준비한다.
 - 1) 직접선거를 위해 기표소, 기표용지 및 기표도구, 투표함을 준비한다.
 - 2) 위원장이 지정한 장소에 선거도구 일체를 봉인하여 보관한다.
2. 선거시행
 - 1) 전 총대가 지정된 기표소에서 무기명(無記名) 비밀투표로 한다.
 - 2) 동점자 처리 : 동점자가 나올 경우 장립순, 연령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 3) 총회임원 선거는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순으로 진행한다.
 - 4) 단독 출마자는 선거 없이 당선을 확정한다.

제24조(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총회총무 선거 시행방법)

1.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총신운영이사장, 기독교신문 이사장, 사장, GMS 이사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선거는 총회규칙 제2장 제6조 4항에 준하여 절충형(제비뽑기+직선제)으로 한다.



- 1) 결선투표 후보자 구슬색 발표 : 위원회에서 결선투표후보자 구슬 색 두 개를 발표한다.
 - 2) 결선투표 후보자 선정 : 후보자들이 기호순으로 구슬함 안에 있는 구슬을 뽑아 이미 발표된 색을 뽑은 후보자 2인을 선정한다.
 - 3) 당선자 확정 : 결선투표 후보자 2인을 대상으로 전 총대가 지정된 기표소에서 무기명(無記名) 비밀투표로 하되, 위원회는 총대들이 후보자의 이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름이 틀린 경우(한 획이라도) 무효표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4) 동점자 처리 : 동점자가 나올 경우 장립순, 연령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 5) 등록된 후보자가 2인 일 경우 바로 결선투표를 시행하며, 단독 출마자는 선거 없이 당선을 확정한다.
2. 재판국원은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상비부)2항 14호에 의하며, 선거관리위원(선출직)은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위원회)4항 3호에 의하고, 총회 총무는 총회 규칙 제3장 제12조(총무) 2항 1호에 의하여 각 시행하되 직선제로 선출한다.
- 제25조 (등록이의신청 및 취소 등에 대한 조치)
1. 이의신청은 등록마감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된 후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 되었을 때 10일 이내 재심의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2. 후보자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석 위원 2/3 이상의 결의로 해당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2항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재등록 공고하여 시행한다.
 4. 당회기 년도 9월 1일 이후에 단일후보의 유고나 등록취소사유 발생으로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총회장은 해당 지역구도에 속한 총회실행위원들을 소집하여 그 지역에 속한 총대들 중 후보자를 추천받아 선거를 진행한다.(단, 상비부장의 경우에는 본 규정 제12조 1항 ④에 의해 선거한다)

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

제26조 (선거운동의 범위와 한계)

1.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선출직), 총회 총무 입후보자(이하 '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金品授受)를 할 수 없다.
2.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상대 입후보자에 대한 사퇴 목적 또는 공정한 선거 진행방해를 목적으로 설득, 회유, 압력, 담합할 수 없다.
3. 노회에서 총회임원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 후 사퇴할 수 없다.
4. 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일까지로 하며, 모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소속교회, 소속노회 이외의 교회, 노회, 총회 산하 모든 예배 및 행사에서 일체의 순서를 맡을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이 종료한 후, 총회 개회 일부터는 교인 동원 및 문자 전송 등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후보자격이 상실된다. 단, 부임원으로서 정임원 후보인 경우와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노회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는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개회 전까지, 그 외의 입후보자는 등록마감일로부터 개회 전까지 모든 언론에 광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과 소속 교회를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까지 총회 기관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5단 광고(경력사항 포함) 4회까지 게재할 수 있다.
6. 전자기기(전화기, 핸드폰, 인터넷 등)를 이용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후보자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하며, 상대를 비방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되고, 총회 첫날(개회일)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매주 5회로 한정하되, 주일날은 전면 금지한다.

7. 본 규정에 의한 시행사항과 관련하여 총회 헌법과 규칙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제소함으로써 총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27조 (후보등록 취소규정)

1. 입후보자 중 자격심사 및 등록서류 검사에 결격사항이 있을 시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단, 등록금은 반환 하지 않는다.
2.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가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고발될 경우 심의분과의 심의 후 위원회 2/3 이상의 결의로 입후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 (선거규정 위반자 처벌규정)

1. 허위사실로 입후보하였다가 등록이 취소된 자는 향후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한다.
2. 본 규정 제26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자로서,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금품을 요구 및 받은 자는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위반 즉시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배상금을 총회 입금일로부터 계수한다.
3. 그 외에 본 선거규정을 위반한 자는 향후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한다.
4. 입후보자가 서류를 미제출하고 발전기금 또는 등록금만 납부한 경우 기금은 반환하지 않고 해 기관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당사자는 향후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한다.
5. 노회에서 총회 임원후보로 추천을 받고 등록하지 않거나 사퇴한 자는 향후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하며 추천한 노회는 향후 4년간 임원후보를 추천할 수 없으며 이를 선관위에서 통보한다. (단, 통보 누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6.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은 노회 추천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추천자는 향후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하며 추천한 노회에서는 향후 4년간 공직자를 배출할 수 없으며 이를 선관위에서 통보한다.(단, 통보 누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7. 본 규정 제14조, 제17조 9와 관련하여 위반 사항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관련된 입후보자의 후보자격은 즉시 상실된다.

제29조 (당선무효 및 보선 규정)

1. 당선확정 후 30일 이내에 총회 임원회에 당선무효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총회임원회 2/3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다.
2. 당선무효자가 발생할 경우 총회임원회는 20일 이내에 해당 지역구도 내에서 입후보자를 받아 본 규정대로 총회실행위원회에서 보선하되, 선거시행은 직전 회기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당해 회기 내로 한다.

제30조(선거소송과 관련한 불제소등 합의서 제출 의무)

1. 모든 입후보자는 공명선거 준수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국가법에 고소, 고발, 제소 등을 하지 않겠다는 불제소등 합의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불제소등 합의서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 및 선거규정 등을 비롯한 제반 결의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 할 것을 각서하고, 선거와 관련하여 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하여 사회법에 의거 민,형사상 제소,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불제소등 합의서를 제출 합니다.”라는 서면을 법무법인공증인사무실(법원에서 일자확정 포함)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단, 총무 후보자는 2부를 작성하여 총회 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제출 해야 한다.



제31조(이의 신청에 따른 국가법에 고소 등에 관한 제재)

본 규정 제14조(입후보자의 등록제한) 제5항에 의거 교단 법 절차에 따라 하지 않고 직접 국가법에 고소, 고발 등을 제출하거나, 총회를 상대로 민사(가압류, 가처분 등 포함)로 제소한자는 본 규정 제28조(후보등록 취소규정) 제6항의 제재를 받는다.

부 칙

1.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본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한다.

| | | | |
|-------|-----|-----|--------|
| 1995년 | 9월 | 22일 | 제정 |
| 1997년 | 12월 | 29일 | 1차 개정 |
| 2001년 | 12월 | 26일 | 2차 개정 |
| 2003년 | 9월 | 25일 | 3차 개정 |
| 2004년 | 9월 | 23일 | 4차 개정 |
| 2005년 | 9월 | 29일 | 5차 개정 |
| 2008년 | 9월 | 26일 | 6차 개정 |
| 2010년 | 9월 | 29일 | 7차 개정 |
| 2012년 | 9월 | 19일 | 8차 개정 |
| 2013년 | 2월 | 27일 | 9차 개정 |
| 2013년 | 9월 | 25일 | 10차 개정 |
| 2014년 | 9월 | 25일 | 11차 개정 |
| 2015년 | 9월 | 12일 | 12차 개정 |
| 2016년 | 9월 | 28일 | 13차 개정 |
| 2017년 | 9월 | 22일 | 14차 개정 |
| 2018년 | 9월 | 11일 | 15차 개정 |